

#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

주주님께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당사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제2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 시: 2023년 03월 29일(수요일) 오전 09시 00분
2. 장 소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40, 삼환하이팩스 A동 10층 MDS테크 교육장
3. 회의 목적 사항
  - 1) 보고 안건
    - 감사 보고
    - 영업 보고
    -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
  - 2) 부의 안건
    - 제1호 의안: 제24기(2022.1.1~2022.12.31)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
    - 제2호 의안: 정관 변경의 건
    - 제3호 의안: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
    - 제4호 의안: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
    - <상기 의안별 상세 내용은 첨부 참고>
4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,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## 5.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 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

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증권회사에 예약하지 않은 전자등록전환 대상 주식 등 실물 증권은 제도 시행일에 효력이 상실되며, 명의개서대행회사의 특별 계좌에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.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 증권을 증권회사에 예약하십시오. 보유 중인 실물 증권의 전자등록전환 대상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([www.ksd.or.kr](http://www.ksd.or.kr) → 전자증권제도 → 제도 시행일의 전환 → 전환 대상 종목)

## 6.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

- 직접행사: 신분증
- 대리행사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 사항 기재, 인감날인), 대리인의 신분증

## 7. 기타사항

「상법」 제542조의4제1항 및 당사 정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전자공고로 갈음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8. 기 타

-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 경비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확산에 따른 안내  
: 코로나-19의 확산에 따라 총회장 입구에서는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주주총회 참석자의 체온을 확인할 예정입니다. 발열 등이 의심되는 경우, 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주분들께서는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 
: 코로나-19 확진자 경로에 의해 총회장 건물이 폐쇄되는 경우, 총회장 장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, 회사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 등을 통해 지체없이 안내드리겠습니다.
- 사업보고서 제출 안내  
: 당사의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전인 03월 21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(<http://dart.fss.or.kr>) 및 당사의 홈페이지(<http://www.hancommds.com>)에 게재할 예정입니다.

2022년 3월 14일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49, DTC타워 9층 (☎ 031-627-3000)

**주식회사 MDSTEK**  
**대표이사 이창열, 이정승**

[첨부1] 정관 신규대비표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<b>제 9 조의 2(우선주식의 수와 내용)</b></p> <p>①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, 그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<u>1/2 범위</u> 내로 한다.</p>	<p><b>제 9 조의 2(우선주식의 수와 내용)</b></p> <p>①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, 그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<u>4분의 1 범위</u> 내로 한다.</p>	<p>- 「상법」 제 344 조의 3 제 2 항 및 「자본시장법」 제 165 조의 15 제 2 항의 해석에 따른 오류 정정</p>
<p><b>제 9 조의 3(전환주식의 발행)</b></p> <p>①~③ (생략)</p> <p>④ 전환주식의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 년의 범위 내에서 <u>발생</u>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</p>	<p><b>제 9 조의 3(전환주식의 발행)</b></p> <p>①~③ (현행과 동일)</p> <p>④ 전환주식의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 년의 범위 내에서 <u>발행</u>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</p>	<p>- 오타 정정</p>
<p><b>제 19 조(전환사채의 발행)</b></p> <p>① (생략)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사채의 액면총액이 1,000 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「<u>증권거래법</u>」 제 19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략적 해외자금 유치를 위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(이하 생략)</p>	<p><b>제 19 조(전환사채의 발행)</b></p> <p>① (현행과 동일)</p> <p>1. ~ 4. (현행과 동일)</p> <p>5. 사채의 액면총액이 1,000 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「<u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</u>」 제 16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략적 해외 자금 유치를 위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(이하 생략)</p>	<p>- 법률 참조 조문 개정 미반영분 반영</p>
<p><b>제 20 조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</b></p> <p>① (생략)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사채의 액면총액이 1,000 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「<u>증권거래법</u>」 제 19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략적 해외자금 유치를 위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(이하 생략)</p>	<p><b>제 20 조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</b></p> <p>① (현행과 동일)</p> <p>1. ~ 4. (현행과 동일)</p> <p>5. 사채의 액면총액이 1,000 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「<u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</u>」 제 16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략적 해외 자금 유치를 위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(이하 생략)</p>	<p>- 법률 참조 조문 개정 미반영분 반영</p>
<p><b>제 24 조(소집통지 및 공고)</b>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회사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 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 회 이상 공고 또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</p>	<p><b>제 24 조(소집통지 및 공고)</b></p> <p>①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 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 회 이상 공고 또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통지에 같음</p>	<p>- 불필요한 구문을 삭제하여 명료하게 표기</p>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. (이하 생략)</p>	<p>할 수 있다. (이하 생략)</p>	
<p><b>제 35 조(이사의 선임)</b> ①~③ (생략) &lt;신설&gt;</p>	<p><b>제 35 조(이사의 선임과 해임)</b> ①~③ (생략) <b>④ 이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.</b></p>	<p>- 경영권 보호를 위한 이사의 해임 방법 표기</p>
<p><b>제 42 조(이사회회의 결의방법)</b> ① (생략)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</p>	<p><b>제 42 조(이사회회의 결의방법)</b> ① (생략)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<b>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</b></p>	<p>- 상법에 표기된 표현을 차용하여 구체적 표기</p>
<p><b>제 44 조(이사의 보수와 퇴직금)</b> ①~② (생략) &lt;신설&gt;</p>	<p><b>제 44 조(이사의 보수와 퇴직금)</b> ①~② (생략) <b>③ 이사가 임기 중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해임될 경우 제 2 항의 퇴직금 이외에 퇴직보상액으로 각 이사에게 30 억 원을 지급한다.</b></p>	<p>- 경영권 보호를 위한 임원 퇴직금 외에 퇴직보상액 규정 신설</p>
<p><b>제 58 조(외부감사인의 선임)</b>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<u>주식회사의 등의 「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</u>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,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,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 58 조(외부감사인의 선임)</b>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「<u>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</u>」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,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,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- 오타 정정</p>
<p><b>부 칙</b> <b>제 1 조~제 20 조</b> (생략) &lt;신설&gt;</p>	<p><b>부 칙</b> <b>제 1 조~제 20 조</b> (현행과 동일) <b>제 21 조(개정 경과 규정) 이 개정 정관은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</b></p>	<p>- 개정 경과 규정 추가</p>

[첨부2] 이사 및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

구 분	이 사	감 사	비 고
전기 보수 한도 액	30억 원	1억 원	실제 지급 총액: 13.3억(이사) / 15백만(감사)
당기 보수 한도 액	30억 원	1억 원	-